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연구*

배영미** · 이지선*** · 허은영****

Ⅰ 알기 쉬운 개요

이 연구는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현 지원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자녀들은 극심한 충격 속에서 일상생활 전반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 문제 등을 겪습니다. 반면,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수용자자녀를 돕는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현 지원체계의 주요 문제를 정리 하면 1. 부모가 수감된 이후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고 연계하는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미흡합니다 2. 정부의 지원체계와 전담 인력이 부족합니다 3. 민간 지원 기관에 의존하여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에는 정보접근성, 안정적 자원 확보 등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1.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책무 강화 2. 법무부 주도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 마련 3. 수용자자녀 지원 전담기관 설립, 4. 수용자자녀를 위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간 협력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연구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수용자자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미발행)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였음.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zsun@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투 고 일 / 2025. 3. 10.

심 사 일 / 2025. 3. 21.

심사완료일 / 2025. 4. 10.

Ⅰ 초록

본 연구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온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용자자녀 지원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지원 체계의 강점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 중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발굴 및 보호 체계 연계 과정에서 체포·구속 단계의 미성년자녀 확인 절차 부재, 정보 접근성 제한, 기관 간 연계 시스템 미비 등의 구조적·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공적 지원체계에서는 법무부 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의 인력 부족, 일시적 긴급지원 중심 서비스, 교정행정과의 가치 상충, 부처 간 협력체계 부재,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셋째, 민간 지원기관은 자원 불안정성, 단기적 지원 중심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의 제한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한계 등의 제약이 확인되었다. 현재 수용자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의 전수조사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생존권 위협 상황에서도 아동보호체계로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책무 강화, 법무부의 장기적 지원 정책 수립,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의 기능·역할 명확화, 공공 전담기관 설립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용자자녀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아동권리의 최우선적 가치 실현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삶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간 협력과 민간협력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초점집단면접, 아동권리, 정책개선

I. 서 론

한국 사회에서 2017년 최초 수용자자녀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사법 절차 전반(체포, 재판, 형 집행 등)에서 수용자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2017)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에의 권고 이후, 법무부를 주축으로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2017),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 구성(2020),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021), 수용자자녀 지원 협의체 구성(법무부, 2021) 등 변화가 시작되었다(윤정숙 외, 2022).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수용자자녀의 접견권이 보장될 수 있었고(박형민 외, 2019: 260-261), 법무부에서는 수용자자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간 지원기관과의 연계 계획을 발표하여(법무부, 2021), 고무적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다수의 수용자자녀는 부모 수감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는 부모 수감 이후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지원을 요청하기조차 쉽지 않다(최경옥, 2017; 최경옥, 이경림, 2017, 2018, 2019; 이지선 외, 2022a; 배영미 외, 2024; 최려나, 2025). 전술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부모의 체포와 수감 시 미성년자녀 유무와 보호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 수용자자녀의 권리보호 및 아동보호체계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목할 점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서는 부모의 신분이나 행동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2조 2항), 부모와의 연락을 유지할 권리(제9조 3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제12조 2항),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될 권리(제3조 1항)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UNCRC 비준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UN으로부터 이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United Nations, 2019).

가족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Thevenon, 2022). 이같은 이유로 자녀양육과 보호를 전담하던 부모의 수감은 자녀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수감은 자녀에게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과 같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용자자녀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부모의 수감 전후 누적된 위기 경험, 가족 형태, 부모의 체포를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 주양육자의 존재 및 지지체계 등에 따라 그 정도와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최경옥, 이경림, 2019; 이지선 외, 2022a; 배영미 외, 2024). 따라서 부모 수감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수용자자녀는 이들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지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용자자녀 지원과 관련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2017) 실태 조사 이래, 수용자자녀의 현황과 내부자적 관점에서의 경험 연구(이지선 외, 2022a; 최려나, 2025), 법제도 연구(권수진, 신연희, 2019; 허민숙, 2020)에 제한되어 있다. 우선, 수용자자녀 인권 관련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7; 권수진, 신연희, 2019; 신연희, 2019)에서는 주로 아동권리 침해 실태와 거시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법제도 연구(허민숙, 2020)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 지원체계의 한계와 개선에 대한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연구보고서(법무부, 2021)에서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즉, 수용자자녀 인권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자자녀 지원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자녀 지원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현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용자자녀 지원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수용자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수용자자녀 지원정책과 지원체계의 문제 및 한계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는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법, 아동복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통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공적 수용자자녀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 본 연구결과는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원칙과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과 실천 간 간극을 좁히고 수용자자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수용자자녀가 처한 위기와 특수성 이해

현행법상 수용자자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나(국회입법조사처, 2020), 일반적으로 수용자자녀는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라도 수감되어 있는 미성년자’로 정의된다. 부모 수감으로 인한 갑작스런 양육환경 변화와 미성년 자녀가 처한 위기는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처한 위기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지선 외, 2024).

국내 수용자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0~6세 연령은 2019년 2,748명, 2021년 3,09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2,473명으로 평균적으로 약 2,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7~12세 연령은 2019년(4,408명)과 2020년(3,816명)에 그 수가 가장 적었고, 2024년 4,600명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미성년수용자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12,103명(2019년), 10,353명(2020년), 12,167명(2021년), 10,450명(2022년), 11,972명 (2023년), 12,791명(2024년)이다(법무부, 2024).

주목할 점은 국내 아동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임에도 수용자자녀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6세 미만과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러한 통계는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중요한 생애 초기에 부모 부재로 인해 아동이 겪게 될 위험과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수감 후 미성년자녀들의 양육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보호상태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미성년자녀끼리 생활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조사에 참여하는 수감부모가 자녀 신상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조사 주체나 기명 유무와 같은 조사방법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보호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자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허민숙, 2020; 배영미 외,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 초기에 자녀들은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신연희, 2019),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기에 이들의 기본권조차 보장받기 어렵다(이지선 외, 2022a). 이들의 절대적·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며(신연희, 2016; 최경옥, 2017), 미성년자녀를 둔 수용자 중, 입소 전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649명(21.0%)이었지만 양육비를 국가지원에 의지하는 수용자는 단 444명(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3).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 수용자자녀가 빈곤과 그에 수반될 여러 위험에 처한 현실을 짐작케 한다.

또한 수용자자녀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의 교도소 수감은 자녀의 사회·정서·인지 발달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라우마적 경험이기 때문이다(Arditti, 2012; Morgan-Mullane, 2018).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수용자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심리·정서적 문제, 양육환경 변화로 인한 역할 적응 문제, 주변인들의 태도 변화, 학교 부적응, 비행 행동 등 다양하다(신연희, 2015; 최경옥, 이경림, 2018; 이지선 외, 2022a; 이지선 외, 2022b; 최려나, 2025). 국내 연구와 유사하게 국외 연구에서도 수용자자녀가 겪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와 낙인, 우울증, 반사회적 태도, 낮은 학업성취도 관련 문제가 보고되었다(Bruster & Foreman, 2012; Thulstrup & Karlsson, 2017).

배영미 외(2024)의 연구에서는 수용자자녀 중 어떠한 사적·공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부모 수감으로 갑작스레 미성년자녀만 남게 될 경우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들은 당장의 주거비와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굶기를 밥먹듯 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관리와 행동 상의 변화, 건강문제, 안전문제, 지속적 스트레스 증가, 면회의 어려움, 지원 정보와 제도적 지원의 불충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2. 국내 수용자자녀 관련 지원 제도 고찰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수용자자녀 지원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UNCRC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에 관한 이행 의무를 가진다. UNCRC에서는 당사국이 수용자자녀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모든 형사 사법단계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최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Nelson Mandela Rules), 여성 재소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 등에서 수용자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규칙을 제시하고 있다(이지선 외, 2025). 상기 국제규범은 국내 수용자자녀 지원제도 세부 법제의 실질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국내 수용자자녀 지원 법령은 수용자자녀를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용자자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다.

우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53조의2에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 조항이 도입되었고(2019년 4월), 동법 시행규칙 117조에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자녀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 회복 지원, 다양한 사회적응훈련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기 지침은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형집행법 제4조, 제65조, 제66조는 수용자

자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형집행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수용자자녀를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내포하는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는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자녀는 부모의 부재 또는 보호 기능 결손 상황에 따라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는 주 소득자의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위기 상황으로 명시하고 있어, 수용자 자녀 역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부모 중 일방이 수용된 경우, 자녀는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복지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의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지원 법령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 세부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프로그램 등의 사업 추진 시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시행령」, 「형집행법 시행규칙」,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접견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자녀의 권리장전 형태의 포괄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공백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국내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고찰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수용자자녀 지원체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공영역의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초 수용자자녀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 권고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아동 친화적인 가족 접견실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전국 교정기관의 ‘아동 친화형 가족 접견실’(전체54개 교정시설 중 47기관)이 마련되었다(법무부, 2021). 이후 2018년 ‘수용자자녀 보호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법무부에서는 2019년부터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며(법무부, 2018), 법무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수용자자녀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고, 주요 목표는 아동권리 보호, 돌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아동 빈곤 및 학대 해결이었다. 같은 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수용자자녀의 접견권, 교정시설에서 부모와 머무는 아동의 교육권·건강권 보장방안 등 인권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 권고했다(United Nations, 2019).

상기 UN 권고 이후 법무부에서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TF’를 구성(2020년 6월)하고, 교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TF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UNCRC의 ‘비차별 원칙’과 함께, 수용자자녀의 인권 보호 및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환경 조성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고, 4개 분과(법·제도 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로 구성되었다(법무부, 2020). 서울지방교정청에서는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2021년 9월), 이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홀로 생활하는 수용자자녀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S 수용자자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긴급 지원하였다(배영미 외, 2024).

이외에도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관계 부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민간 수용자자녀 지원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자녀 지원 협의체’ 구성(2021년),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의 확대(4개 지방 교정청)를 기반으로 위기수용자자녀에 대한 긴급 현장 지원, 지자체 및 지원 단체와의 연계, 사례관리 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 2021). 반면,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실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음으로 민간영역의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는 수용자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S 수용자자녀 지원기관 주도로 마련되었다. 이 기관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족(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다중적 위기에 처한 수용자자녀(가족)에게 필요한 자녀보호 관련 통합적 정보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장학금, 긴급 위기 지원, 물품 지원), 멘토링, 당사자 공동체 활동, 상담지원, 접견지원, 통합적 개별지원, 가정위탁 및 후견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족회복지원서비스, 전문가 교육훈련, 조사연구,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 등 여러 세부 영역에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사회의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는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법무부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에서 발굴 및 의뢰를 하고, 실제 지원을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자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민간기관으로의 의뢰 뿐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교정청

내 ‘위기 수용자자녀지원팀’에서 총 287가구를 지원했으며(법무부, 서영교의원실 제공), 같은 해 S 수용자자녀 지원기관으로 115건 의뢰되었다. S 기관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중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공적 지원체계로부터의 의뢰 건수(115건, 27.6%)에 비하여 가족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신청한 건은 242건(58.2%)에 육박한다. 이같은 지원 신청 및 의뢰 현황은 수용자자녀 지원에 있어 공적 지원체계보다 민간 지원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실효성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거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수용자자녀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초점집단면접(FGI) 연구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및 지원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같은 방법론과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첫째,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는 수용자자녀를 둘러싼 관계 부처(교정행정-법무부, 아동보호-보건복지부, 가족지원-여성가족부)와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관련 부처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자자녀 지원 체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FGI 방법이 적합하다. 둘째,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현장에서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 현장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장벽과 도전을 직접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과 통찰은 실효성있는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현장 전문가들이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유도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은 현장 중심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양난주, 2009). 따라서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도 단순한 제도적 분석을 넘어,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FGI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용자자녀 지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 내용에 대한 특정 관점이나 요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수용자자녀를 지원 경력(최소 1년 이상), 둘째,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정책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 경험, 셋째, 현재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관련 업무 경험이 있을 것, 세 가지이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기법을 활용하여 집단별로 적절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Braun & Clarke, 2006; 강은영, 2021).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은 먼저 연구자가 수용자자녀 지원 민간전문기관의 대표(A-1)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였다. A-1의 추천을 통해 동일 기관의 다른 실무자(A-2, A-3)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무자(A-2, A-3)의 추천을 받아 법조계, 심리상담, 공공사례관리, 교정행정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을 포함시켰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방법, 자발적 참여 원칙,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A그룹은 수용자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수용자자녀 발굴, 옹호,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평균 8.2년의 수용자자녀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B그룹은 다양한 영역(법조계, 심리상담, 공공사례관리, 교정행정)에서 수용자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평균 4.9년의 관련 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수용자자녀 지원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한계, 개선방안에 대한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다.

표 1

FGI 참여자들의 특성

그룹 구분	참여자 코드	연령	성별	직업	소속기관	수용자 자녀 지원 제공 경험	수용자 자녀 지원 제공 기간
실무자 그룹 (A)	A-1	59	여	사회복지사	수용자자녀 지원 민간전문기관	수용자자녀 지원 사업 총괄	10년
	A-2	54	여	사회복지사	수용자자녀 지원 민간전문기관	여성 수용자 자녀 지원 사업 관리	5.9년
	A-3	53	여	사회복지사	수용자자녀 지원 민간전문기관	수용자 자녀 지원 사례 관리	8.8년
현장 전문가 그룹 (B)	B-1	40	여	변호사	공익법률지원단체	수용자자녀 지원 및 옹호	9년
	B-2	52	여	심리상담사	00상담소	수용자자녀 지원 및 상담	4.2년
	B-3	60	여	공공사례관리사	00시	한부모 가정 사례관리, 연계	2.10년
	B-4	40	여	아동통합사례관 리사	00구	한부모 가정 사례관리, 연계	1.5년
	B-5	59	남	전)교정공무원 (현) 목사	00교회(출소자 지원)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 지원	7년

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FGI는 지원단체 실무자 그룹(A), 현장 지원 전문가 그룹(B)으로 나누어 2024년 7월 23일, 8월 12일, 2회 진행되었다. FGI는 두 명의 연구자가 동석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FGI마다 번갈아가며 연구자 1명이 주도하여 수행되었다. FGI는 참여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방식을 모두 활용하였으며, A그룹은 대면방식으로, B그룹은 비대면방식으로(실시간 온라인) 진행되었다.

FGI는 Krueger와 Casey(2009)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도입 질문(10분), 주요 질문(90분), 마무리 질문(20분)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먼저, 도입 질문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개요와 목적을 간략히 설명한 후, 참여자들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였다. 이후, 각 주제별 질문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답변하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별 질문은 수용자자녀 지원 제공 시의 경험, 어려움과 한계, 현행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및 기능(수용자자녀 지원기관, 지역사회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전반을 조율하며, 집단 내 다양한 시각이 공유되고,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참여자들의 의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최소한의

개입을 유지했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약 2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GI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권리보호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고지된 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연구에의 자발적 참여 보장, 비밀보장(예외적 사항 포함), 자료수집과 활용 목적 등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인터뷰 녹취 파일과 전사본에 대한 별도 관리와 연구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폐기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인터뷰의 전 과정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으며, 인터뷰가 끝난 즉시 전문 속기사에 의해서 전사되어 질적 데이터로 정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Braun과 Clake(2006)의 주제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자료의 범주 내에서 대상자의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핵심주제를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표본의 크기, 구성, 연구질문, 그리고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김인숙, 2016).

분석 과정은 Braun과 Clarke(2006)의 6단계에 걸친 주제 분석 절차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분석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이 각각 전사된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추출하여 독립적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생성된 코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주요 패턴과 의미를 파악하고 분류하여 하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여 주제 간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는 연구참여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되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원의 삼각검증(triangulation) 방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녹취록, 디브리핑노트, 연구 회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심층적이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도출된 주요 주제와 핵심 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로부터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FGI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문제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문제를 ‘수용자자녀 발굴 및 보호체계로의 연계 어려움’, ‘공적 지원체계의 한계’, ‘민간 기관을 통한 지원의 한계’라고 인식했다.

1) 수용자자녀 발굴 및 보호체계로의 연계 어려움

(1) 정책-이행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 발굴 및 보호체계로의 연계 관련하여 구조적·행정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체포, 구속, 구인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보호와 아동 보호체계로의 연계를 권고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과 법이 제·개정되지 않았으며, 권고처럼 지원단체로의 지원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에 국가인권위 조사한 후에 권고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법무부에서도 대책마련 발표는 다 했어요. 그런데 만들었고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실제 이행 사항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A-1)

(연구자: 미성년자녀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이 기관으로 연결이 된 경우들은 있었나요?) 없어요. 1 건은 수용자이자 피해자인 사례가 경찰을 통해서 연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은 매뉴얼에 의한 건 아니었고 형사의 개인적 연락으로 연계되었어요.(A-3)

(2) 수용자자녀 현황 및 지원 정보 접근 제한

연구결과 법무부에서는 매년 수용자자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수용자자녀 현황과 관련 자료는 정보 공개 요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았다. 또한 미성년수용자자녀 전수조사 후 보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법무부가 매년 4월에 한다고는 하는데,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랑 했던 조사처럼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미성년 아이가 몇 명인지, 정도로 조사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A-1)

(3) 공적 지원체계보다 민간기관으로의 지원 신청 증가

2021년, 교정청 내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팀(이하 지원팀)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민간기관으로의 수용자자녀 지원의뢰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와 대조적으로 지원팀에서 민간 지원기관으로의 의뢰나 연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원팀에 따르면 수용자자녀 지원기준의 변경(부모수감에 대한 인지 아동)으로 인해 S 수용자자녀 지원기관으로의 의뢰·연계 아동이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 참여자들은 수용자나 가족이 민간 지원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감 후 수년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지원기관을 알게 되어 가족이 직접적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 신청하는 건수가 늘었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저희는 아이들이 부모의 수감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말이죠. 교정청에서는 단순히 미인지 케이스가 많아서 케이스가 줄었다고 해석하는 건 되게 위험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A-1)

(4) 기관 간 연계 시스템 미비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거나 미성년자녀 단독 세대로 생활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실태가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법무부로부터의 연계 및 아동보호체계 차원의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가 [아동양육시설]생활시설 방문 조사에 갔을 때도 수용자자녀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통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연계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어요.(B-1)

지방교정청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지원 의뢰 건수들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의외로 저희가 직접 개별 교도소 통해서 발굴했을 때보다 사실 의뢰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지원팀의) 실무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출소 기간이

1년 이상 남거나 그다음에 부모의 수감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우선 지원하게 되면서 케이스가 더 줄었다고, 지금은 [아동의 부모 수감] 미인지 케이스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A-3)

2) 공적 지원체계의 한계

(1) 전담 인력 부족 및 지원 수준 불충분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며, 법무부 교정청 내 ‘지원팀’의 담당자는 공무원직 실무관인 사회복지사 1인이라는 점에서 인적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수용자 관리’와 ‘교정행정’이 우선인 교정기관에서 ‘자녀와 가족 지원’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용자자녀를 발굴하더라도 일시적 긴급지원 수준에 그치고, 사례회의 조차도 민간 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수용자자녀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관이 적극적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저희가 꿈꾸었던 그림은 적극적으로, 지방교정청, 개별 교도소들을 통해 아동들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공문을 보내고 추천이 교도소 통해서 들어오면 지방교정청들이 그걸 취합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적극적인 발굴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위기지원팀의 실무관은 한 명이잖아요. 각 교정청에 한 명씩이니까 전국에 네명. 이 사람이 사실 개별 교도소에서 들어오는 건수만으로도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이미 full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님들도 ‘내가 지금 업무에 여유가 있다면 뭐 하겠지만, 나도 지금 힘든데 왜 이 사람의 자녀, 가족까지 왜 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교도소 안에 많은 거 같아요.(A-3)

수용자한테 바깥에서 아동에게 서비스가 됐는지 알려는 준다고 하는데, 그 실무관도 교도관은 아니잖아요. 직접 수용자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고 교도관들을 통해서 의뢰받고 전달하는 상태라, 자기는 전달했지만 교도관이 전달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또 각각의 지방교정청마다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과장님이 오셔서 더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협조적인 것들도 있고, 실무관이 원래 이 일만 하게 돼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은 같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로사항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A-2)

(2) 형식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수용자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2021년 법무부가 발표한 ‘수용자자녀 지원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협의체 구성 유무나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

여 연구참여자들은 유관기관 간 협력이 되지 않아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연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수용자자녀(와 가족)들은 이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즉, 부모 수감 직후부터 극심한 생활고를 겪더라도 이들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수용자자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통장에 돈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채무가 남아서 생계가 어려워 당장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만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수감되기 직전까지 짧게는 6개월 동안 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자녀와 가족들은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해요.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어머니도 알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 명의로 수감된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차가 있어서,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차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어요.(A-3)

3) 민간 지원기관을 통한 수용자자녀 지원의 한계

(1) 안정적 재정 확보의 어려움

국내 최초로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해 설립된 S기관은 민간영역에서 지난 10년간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수 후원금과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금 성장지원비를 가구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들 하나하나를 개개인으로 생각하면 아이들한테도 개별화시켜서 하나하나 아동 단위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죠.(A-2)

(2) 전국 수용자자녀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S기관은 수도권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나아가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역으로 직접 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인적·물적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는 수용자자녀(가족)와 개별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B-2)

2.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형집행절차에 따른 수용자자녀 발굴과 지원 연계’, ‘수용자자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에 대한 책무 강화 및 체계 개선’,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범부처간 협력 체계 강화’, ‘수용자자녀 전담기관의 설립·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와 지원 책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1) 형집행절차에 따른 수용자자녀 발굴 및 지원 연계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형집행절차, 체포 및 구인단계에서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신입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보호 조치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발굴과 지원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초기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재판도 진행되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방치되기가 집 안에서도 가장 쉬운 단계이고, 위기 단계거든요. 양육자들조차도 의도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고, 사실 아이들 외에도 본인들이 닦친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이죠. 그럴 때 바로 연계가 되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원 연계도, 공적 자원의 안내를 해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족이 꽤 또 많아요.(A-3)

2) 수용자자녀 실태조사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전문가집단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수용자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아동 보호 및 양육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도모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체계 및 내용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기초적인 통계부터 필요해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거 확인되는 건 2021년 정도 검색이 되는데, 그런 것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B-1)

3) 수용자자녀 지원정책과 체계 개선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책무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수용자자녀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리·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더 나아가 현 지방교정청 내 수용자자녀 지원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공 차원에서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설립도 제안되었다.

표 2

체계 개선방안 분석 결과

의미	내용
(1)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책무 강화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공적 전달체계의 필요성 수용자 자녀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무부 주도
(2) 위기수용자자녀지원팀의 기능과 역할 명확화	위기수용자자녀지원팀의 역할, 기능, 평가 미성년수용자자녀 발굴 및 지원
(3) 수용자자녀의 특수성 이해와 지원 전담기관의 설립	컨트롤 타워, 수용자자녀가 처한 특수성 이해와 지원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어려움에 따른 통합적 지원
(4)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범부처간 협력과 연계 - 교육부(교육권, 진로탐색 외), 보건복지부(정신건강지원), 여성가족부(가족지원)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 수용자자녀 지원
(5)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1)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책무 강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수용자자녀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 것 이상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국에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에서, 그러니까 S기관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조사를 보면서, **아이들만 덜렁 남겨진 숫자가 적지 않았거든요.**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최소한 없으려면 결국에는 **민간 전달체계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공공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필요성을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B-1)

그 이유는 부모의 수감 이후 수용자자녀들 중 부모의 수감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자녀들 또한 보호받지 못하여 방치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즉, 부모의 수감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임에도 보호체계 밖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다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수감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많이 붕괴되어 있다 보니까 수용자들이 수감 되는 순간에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취업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동들은 거의 방치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지원의 중요성인데, S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B-5)

이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부모 수감 이후 미성년자녀들만 남아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조사에 기반한 수용자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각 부처에서의 어떤 **통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개입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에서의 S기관의 지금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공적 체계 안에서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S기관의 사업이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법제화가 되어야 하고, 공적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B-4)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 정책과 지원을 전담할 주무부처로 법무부를 꼽았다. 그 이유는 수용자자녀가 처한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이 최선이며, 교정행정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이기에 수용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처라고 인식했다.

[법무부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재범률과 전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안녕, 질서 이런 것들을, 범죄서를 세우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용자자녀들을 돌보는 일뿐만이 아니라 수용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을 잘 교육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것으로 봤을 땐**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B-5)

지원체계들이 다 분절되어 있는데, 거기서 각각의 지원체계에서 발굴되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들이 연결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들이 마련돼야 되고, 이제 국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B-1)

(2) 위기수용자자녀지원팀의 기능과 역할 명확화

연구참여자들은 지방교정청 내 ‘지원팀’에서는 수감 초기 미성년자녀 유무와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에서는 신규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정보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자녀들은 보호체계에서 발굴조차 되지 않았다.

‘지원팀’이 생겨서 가장 기대한 건 굉장히 적극적인 발굴이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기대한 거예요. 제가 가정 방문 가다 보면 벌써 수감된 지 몇 년이 지난, 아이가 정말 힘들었을 상황이 한참 지나고 나서 S기관에 연계가 됐는데 “왜 이제야 신청하셨어요? S기관은 벌써 2015년부터 있었는데?” 몰랐죠. 아버님도 안에서 모르셨대요. “몰랐죠. 처음 들었죠”라고 하는 건 뭔가 교도소 안에서도 수용자들에게도 적극 안내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용되고 초기에 가장 그 아이들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발굴되어야 될 텐데’라고 했고, 적절한 서비스에 개입하고, 발굴한 것들을 의뢰하고, 연계하고(A-3)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지방교정청 내 ‘지원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용자자녀 지원팀의 기능과 지원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고,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정본부 안에서도 그냥 팀만 만들어놓고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는 이게 아니라 그 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말 도움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실태 조사도 몇 명 있냐, 몇 명이 들어왔냐, 몇 명 신청받았냐, 몇 명 의뢰했냐는 이런 단순한 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미들이나 이런 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희의 요청인 거죠(A-2)

2022년부터 하고 있는 위기수용자자녀지원팀들 지금 막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B-1)

(3) 수용자자녀의 특수성 이해와 지원 전담기관의 설립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에 기반하여, 실효성있는 수용자자녀 지원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용자 지원센터가 생기고 그곳에서 수용자자녀를 위한 특별한 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동의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걸 저는 **로드맵**을 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B-1)

이러한 지원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용자자녀 지원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어떤 사업들의 맥락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서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과연 필요한 건지는, **각 부처에 이미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B-4)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수용자자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교정행정과 분절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지원 전담기관이 설치되고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 경우, 교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자자녀 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으로 인한 교정행정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즉, 교정행정기관에서는 수용자(부모)를, 지원기관에서는 수용자자녀를 지원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정행정 효과도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희는 밖에서 아이들과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관들은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자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교정기관과 교정시설이잖아요.** 그들은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는 밖에서 아이들과 가족 잘 만날 수 있는 구조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서비스의 효과가 나고, 교정은 교정대로 효과가 나고,** 아이들은, 이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면 **재범률은 확실히 줄고, 그다음에 아버님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A-1)

(4)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연구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수용자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즉, 부모의 수감이라는 사건이 아동발달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남아 있는 가족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이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분들이 트라우마에 노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B-2)

특히,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교육, 보건, 복지, 여성과 가족 등 다양한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범부처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인 예로 교육부와 연계하여 수용자자녀의 학업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가족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수용자자녀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메인은 법무부가 가져가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전문성을 살려서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심리사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예 법무부에서 이렇게 딱 체계를 잡아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B-2)

미성년수용자자녀의 다수가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수용자자녀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청과 연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일차적으로 교육권 보장을 통한 안전망 제공, 이차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부모의 부재 상황에서 자녀의 진로 상담 및 정체성 확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용자자녀와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정신건강문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부모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이후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전달체계와 협력하여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수용자자녀의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거는 좀 협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하고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약물 순응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B-2)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와 가족이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로 여성가족부를 꼽았다. 그 이유는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와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서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분들하고 연계가 필요하고, 가족 회복,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B-2)

또한 수용자자녀가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내 수용자자녀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에는 이 **아동보호체계,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에서 우리 수용자자녀들을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B-1)

(5)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 지원에 있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기관과의 협업과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즉, 공공과 민간이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용자자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들은 진짜 생각해 보면 어디든지 있긴 있어요. 그걸 연계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기관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B-3)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용자자녀 지원 단체, 법조계, 교정시설, 지방정부, 심리상담 영역에서 수용자자녀 지원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최초 발굴에서부터 필요한 지원의 연계, 지역사회 보호체계로의 연계에 이르는 현행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실효성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

현행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수용자자녀 발굴 및 보호체계로의 연계 과정 즉, 체포·구속 단계에서의 미성년자녀 확인 절차 부재, 정보 접근성 제한, 기관 간 연계 시스템 미비 등의 구조적·행정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공적 지원체계에서는 법무부 교정청 내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의 제한된 인력, 일시적 긴급지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 교정행정과 가치 상충, 부처 간 협력체계 부재,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셋째, 민간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에서는 불안정한 재원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 단기적 지원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의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한계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용자자녀가 다층적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부모수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용자자녀 지원기관에서 수용자자녀를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기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수용자자녀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정행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차원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이 설립·운영되기를 기대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법무부 차원의 수용자자녀 전담기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동권리 보장을 최우선적 가치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수용자자녀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그동안 숨겨진 피해자로 드러나지 않았던 수용자자녀들의 기본권, 즉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부모 수감으로 인해 겪게 된 다양한 위기상황으로부터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과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수감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신속한 발굴과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 집행 절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녀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와 직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수감 이후 수용자자녀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 수용자자녀에 대한 초기 발굴과 지원체계로의 연계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지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전문가들은 지원매뉴얼이 없어 개인적 역량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부모와의 연락, 부모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또한 법무부의 교정체계와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체계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 수용자자녀 발굴과 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을 크게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자녀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즉,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용자자녀 지원을 전담할 부처와 지원기관’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법무부가 가장 적합하며, 법무부 산하 수용자자녀 지원 전담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지식, 정보, 기술적 차원, 지원단계별 과업과 역할, 지역사회기관에서의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공공의 재원을 기반으로 수용자자녀 지원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전담기관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수용자자녀와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주도하에 범부처간 협력체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법무부에서 수용자자녀 지원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은 체계가 마련된다면 교정행정으로 인한 교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용자자녀가 처한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해 수용자자녀와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내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소통창구, 네트워크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연계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관에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민관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수용자자녀에 대한 발굴과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수용자자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는 단순히 아동과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현행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안된 개선 방안은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현장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탐색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민간 지원단체의 실무자, 법조계, 교정행정, 심리상담, 지역사회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수용자자녀 지원 체계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여러 구성요소(발굴, 연계, 지원 등)와 관련 주체들(법무부, 교정시설,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고, 체계 전반의 개선을 위한 통합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현장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과 통찰에 기반한 것으로, 정책과 실천 간의 간극을 좁히고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마련은 단지 수용자자녀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동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래 (2013). 미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수용자의 자녀, 장애소년, 보호시설수용소년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1, 1-35.
- 강경래 (2023). 부모의 교정시설수용과 아동의 권리보호. **한국범죄정보연구**, 9(1), 1-30. doi:10.33563/KSCIA.2023.9.1.1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 5. 30.) 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제도개선 등 권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법률 제20446호.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법·정책보고서**, 44.
- 권수진 (2020). 수용자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수진, 신연희 (2019).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연구총서 19-AA-0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긴급복지지원법 (2005). 법률 제19448호.
- 김주미, 허미화 (2019).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선영, 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연구총서 12-AB-03).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영, 양현규, 장선숙 (2019).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미국, 영국, 캐나다. **제30회 (사)아시아 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49-83.
- 박선영 (2013).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자녀지원과 경찰의 역할, **자치경찰연구**, 6(1), 117-138.
- 배영미, 이지선, 허은영 (2024). 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청소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5(4), 255-282. doi:10.4816/sky.2024.35.4.255
- 법무부 (2023). 2023년 수용자 미성년자녀 현황조사 결과(2023년 5월).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조사.
- 법무부 (2018).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보도자료(2018.12.12.).
- 법무부 (2020).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아동 인권보호’ 법무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보도자료(2020.6.26.).
- 법무부 (2021).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보도자료(2021.05.11.).

- 법무부 (2023). 2023년 수용자 미성년자녀 현황조사 결과(2023년 5월).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조사.
- 법무부 (2024). 2024 교정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1).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 1631호, 2023. 6. 28.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 서영교의원실 질의에 따른 법무부 답변서. 위기수용자자녀 지원제도 관련 국회 간담회 자료집 (2024년 11월 20일)
-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2008). 법무부예규 제1364호.
- 신연희 (2013).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의 내용분석: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의 적용. **교정담론**, 7(2), 225-256.
- 신연희 (2015).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 출소준비 수형자 및 출소자 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51, 219-249.
- 신연희 (2016).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0(1), 129-158.
- 신연희 (2019). 수용자 자녀들의 상황과 관련 제도의 과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3(3), 261-296.
- 아동복지법 (1961). 법률 제20885호.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2024). Annual Report.
- 이지선, 배영미, 전민경, 전규해 (2025. 2). **수용자자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미발행 연구보고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이지선, 최려나, 한기명 (2022a). 수용자 자녀의 부모수감 이후 삶의 변화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1(1), 1-31. doi:10.24300/jkscw.2022.03.71.1.1
- 이지선, 최려나, 한기명 (2022b).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3(1), 27-50. doi:10.14816/sky.2022.33.1.27
- 이지선, 최려나, 허은영 (2024). 수용자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연구논총**, 40(2), 397-431.
- 최경옥 (2017).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 미성년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1(3), 181-214.
- 최경옥 (2017).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 미성년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1(3), 181-214.
- 최경옥, 이경림 (2017). 수용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비난과 생존 사이에서. **한국사회복지학**, 69(2), 89-115. doi:10.20970/kasw.2017.69.2.003

- 최경옥, 이경림 (2018). 부모 수감 후 남겨진 자녀의 삶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2, 171-206. doi:10.16975/kjfs.w.2018..62.006
- 최경옥, 이경림 (2019).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23-53.
- 최려나, 정익중, 김다인, 김정운 (2022).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가의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69(1), 103-142. doi:10.16975/kjfs.w.69.1.4
- 최려나 (2025). **수용자 자녀의 부모 수감 이후 사회적 관계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22).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 발생유형별[데이터파일]**
- 하우봉 (2020). **음악치료가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부모가족지원법 (1989). 법률 제20548호.
- 허민숙 (2020).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50). 법률 제19105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법무부령 제1072호.
- Arditti, J. A. (2012). Child trauma within the context of parental incarceration: A family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4(3), 181-219. doi:10.1111/j.1756-2589.2012.00128.x
- Bruster, B. E., & Foreman, K. (2012). Mentoring children of prisoners: Program evaluation.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27(1-2), 3-11. doi:10.1080/19371918.2012.629955
- Morgan-Mullane, A. (2018). Trauma 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ith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6(3), 200-209. doi:10.1007/s10615-017-0642-5
- Thulstrup, S. H., & Karlsson, L. E. (2017). Children of imprisoned parent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A systematic review. *Societies*, 7(2), 15. doi:10.3390/soc7020015
- United Nations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ABSTRACT

A study on field experts' perceptions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Bae, Youngmi* · Lee, Jisun** · Heo, Eunyou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rovement measure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group that has not been a major policy consideration in child protection and support areas, through the perspectives of field experts. Field experts who directly experience the limitations of the support system at the frontline of supporting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rovide insights that can bridge the gap between policy and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two groups: three practitioners from supporting organizations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five experts from legal, psychological counseling, corrections, and public child integrated case support field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revealed three main problems in the current support system: difficulties in identifying children and connecting them to protection systems, limitations of public support systems, and limitations of support through private organizations. Six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strengthening state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establishing support policies 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clarifying the role of the crisis support team, establishing dedicated institutions for supporting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strengthening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and activa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for improving the right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enhancing support systems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support system, focus group interview, children's rights, policy improvement

*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